

제392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현안보고

경 기 도
(기후환경에너지국)

자가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(REGO) 발급·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

- ◆ 정부에서 자가설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인증서(REGO) 시범사업에 道에서 설치·지원한 3kW 주택태양광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 거래
 - ※ REGO(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): 자가소비한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량을 인증하여 기업에게 판매하고, 기업은 RE100이행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

□ 추진배경

- 道에서는 주택태양광 설비를 활용한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확대 및 도민의 추가소득 창출을 위해 자가설비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 추진
- 정부는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REGO 시범사업 예정('26. 8~11.)
 - 다만, 발전용량 10kW이상 한정, 도민 체감도가 높은 주택태양광(3kW)은 제외
- 이에, 道の 3kW 주택태양광 설비를 정부 REGO 시범사업과 연계·실증 추진

□ 협약개요

- 협약일자 : 2026. 7. 22. (수)
- 협약기간 : 2026. 7. 22. ~ 2027. 7. 21.
- 협약대상 : 경기도, 기후에너지환경부, 한국에너지공단
- 주요내용
 - 재생에너지 자가설비 인증서 시범사업의 추진 및 운영 협력
 - 道 추진 주택태양광 설비를 정부 REGO에 연계, 인증서 발급 실증
 - 주택태양광 등 소규모 자가설비 인증서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 및 표준모델 마련

《 경기도 주택태양광 자가설비 인증서 관련사업 》

- 사업명 : 주택태양광 G-REC 도입 원스톱 지원
- 사업내용 : 道 내 주택태양광설비(3kW) 설치가구 발전량 측정 지원(370가구)
- 사업비 : 250백만원[경기도 에너지전환 확대 조성사업의 일부(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)]
- 위탁기관 :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
- ※ G-REC : 경기형 주택태양광 자가설비 인증서

□ 기대효과

-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 발급을 통한 기업의 RE100 이행수단 확대
- 3kW 주택태양광 인증서 발급을 통한 도민 추가소득 모델 마련

자가설비 인증제(REGO) 발급·거래 시범사업 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

기후에너지환경부, 경기도 및 한국에너지공단은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(REGO) 발급·거래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소규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실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(REGO) 발급·거래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주택태양광 등 소규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대한 실증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모델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각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고, 상호 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업무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.

제3조(협력사항) 각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인증서(REGO) 발급·거래 시범사업 추진·운영
2. 주택태양광(3kW) 설비의 RTU 설치 및 REMS 연계
3. 발전량 데이터의 수집·검증 및 REGO 발급 실증
4. 소규모 자가소비형 재생에너지 운영기준 및 표준모델 마련
5. REGO 제도 개선 및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발굴
6. 기타 협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4조(기관별 역할) 각 기관은 고유한 기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역할을 각 호와 같이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.

1. 기후에너지환경부는 REGO 시범사업 총괄, 정책지원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.
2. 경기도는 주택태양광 설비의 RTU 설치 및 REMS 연계 등 소규모 설비의 REMS 연계 및 실증사업을 지원한다.

3. 한국에너지공단은 REGO 발급 및 인증서 관리, REMS 운영, 발전량 검증 등 시범사업 운영을 담당한다.

제5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본 협약의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공개 정보를 상대 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.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본 협약이 종료된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.

제6조(협약기간) 본 협약의 효력은 각 기관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, 협약기간은 서명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. 다만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협약내용의 변경) 각 기관은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.

제8조(법적구속력 배제) 본 협약서 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제5조를 제외하고는 협약당사자를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제9조(기타사항) 본 협약에서 명시하지 않는 사항 중 협약 이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거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각 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7월 22일



장관 김 성 환
代재생에너지정책관
국장 심진수



도지사 추 미 애
代기후환경에너지국
국장 차성수



이사장 최 재 관
代신·재생에너지센터
소장 김범식